

<붙임 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사업의 목적 제거 및 추가

2. 주요 변경내용

유가증권투자 컨설팅, 기업리서치, 실사 및 홍보대행, 기업금융관련 컨설팅, 자금조달관련 컨설팅, 투자정보의 판매업무, 기업경영 자문업무, 기업자금조달 자문업무 등 7개의 사업 목적을 제거하였으며,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8항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등 2개의 대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였음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
신구조문대비표

舊 정관

제 2조(목적)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유가증권투자 컨설팅

1. 기업리서치, 실사 및 홍보대행

1. 기업금융관련 컨설팅

1. 자금조달관련 컨설팅

1. 부동산 임대업

1. 투자자문업

1. 투자정보의 판매업무

1. 기업경영 자문업무

1. 기업자금조달 자문업무

1. 투자일임업

1. 위 업무이외에 기획재정부정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

1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新 정관

제2조(목적)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부동산 임대업

1. 투자자문업

1. 위 업무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

1. 투자일임업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8항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
집합투자증권 판매업

1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